

영등포구의회
제156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2010. 10. 25.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제안일자 : 2010. 10. 13.
- 제안자 : 영등포구청장

■ 개정(제안) 이유

-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공사의 비용은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한 『도로법』 제76조에 따라 도로굴착으로 인한 도로복구공사 시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을 도로굴착 원인자에게 부담시켜 징수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도로굴착으로 인한 도로복구공사 시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을 도로굴착 원인자에게 부담시켜 징수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추가함.
(안 제3조제2항)
- “도로굴착 면적(복구금액)에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중 건설 부문의 공사감리업무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감독업무비 산출방법을 추가함.(안 별표 1 제2호)
-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문구를 정비함.

■ 관련법규

- 「도로법」 제76조
-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 서울특별시 조례 개정 요청 공문
[도로관리담당관-15250(2010.7.15)]

■ 타 자치단체 조례개정 현황

- 서울특별시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도로법」 제76조에 따라 도로굴착으로 인한 도로 복구공사 시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을 도로굴착 원인자에게 부담시켜 징수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가 2010.7.15(시행일 2010.10.15) 개정되어 전 자치구 도로굴착복구 업무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가 개정 내용에 대하여 조례 개정할 것을 전 자치구에 요청한 바 있어 이를 반영하고,
- 그 동안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문구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0. 10. 25.

보 고 자 : 이 남 식

【참고자료 : 관련 법령】

관 련 법 령

도로법

- 제76조 (원인자 부담금)** ①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공사의 비용은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0.3.22>
 ②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 또는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0.3.22>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0.10.16] [서울특별시조례 제5006호, 2010. 7.15, 일부개정]

- 제3조 (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①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에 따라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개정 2010.01.07)
 ②원인자부담금은 직접손케부분 및 간접손케부분에 대한 복구와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의 시행자가 직접손케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손케부분에 대한 복구비용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01.07, 2010.04.22, 2010.7.15)
 ③제2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산출함에 있어 굴착표준 최적구배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은 별표 1, 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따르고, 복구비용 산출 단가는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개정 2010.01.07, 2010.04.22)
- 제6조(권한의 위임)** 제3조,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및 강제징수·환급 및 추가 징수에 관한 시장의 권한은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3.06.16, 2010.01.07, 2010.04.22)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지식경제부공고, 제2008-109호 2008.06.03개정)

- 제13조(요율)**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할 경우 건설부문의 요율은 별표 1과 같고, 통신부문의 요율은 별표 2와 같으며, 산업플랜트부문의 요율은 별표 3과 같고, 기본설계·실시설계·공사감리 업무 단위별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 별표 1 】 건설부문의 요율

공사비	요율	업 무 별 요 율(%)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감리
5천만원 이하	3.24	6.49	3.02	12.75
1억원 이하	3.04	6.07	2.85	11.96
2억원 이하	2.42	4.85	2.26	9.53
3억원 이하	2.22	4.43	2.06	8.71
5억원 이하	2.01	4.03	1.89	7.93